

우체국 청년미래적금 특약

제1조 【적용범위】

- ① 이 특약은 「우체국 청년미래적금」 (이하 “이 적금”이라 합니다) 거래에 적용하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 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
- ② 이 적금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가입대상】

- ① 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 한합니다.
 1. 가입일 현재 19세 이상 34세(병적증명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합니다) 이하인 사람 (단,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4세를 초과하게 된 자가 해당 기간 중에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확인합니다)
 -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합니다)
 -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주5)}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주5)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② 이 적금에 가입한 후 제2조제1항에 따른 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③ 이 적금은 공동명의로 가입할 수 없고, 양도 및 명의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④ 이 적금은 이 적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합니다)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⑤ 이 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 제91조의22에 따른 청년도약계좌(이하 “도약계좌”라 합니다)와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제3항제2호에 따라 이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특정기간에 도약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이하 “연계가입(갈아타기)”라 합니다) 도약계좌와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 ⑥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으로 합니다.

제3조 【신청 및 가입】

- ① 이 적금은 신청 후 제2조의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에 한해 특정 지정 기간에 가입합니다.
- ② 이 적금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 본인의 소득구분에 따라 일반소득자와 개인사업자(소상공인) 중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른 특정기간 중에 19세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기간의 첫 영업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4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

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자유적립식)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가입일부터 3년으로 합니다. (단, 만기일 전에 해지 할 경우 만기 해지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 ① 이 적금의 저축금액은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50만원의 범위에서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주6)} 납입한도는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주6) (예시) '26.7.20.일 가입 시

1년차('26.7.20~'27.7.19), 2년차('27.7.20~'28.7.19), 3년차('28.7.20.~'29.7.19)

- ② 도약계좌와 중복 가입한 자는 초입금 0원으로 가입되며, 도약계좌 해지 후 이 적금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③ 도약계좌와 중복 가입한 자는 이 적금 가입 후 특정기간^{주7)} 내에 도약계좌를 해지하지 않으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됩니다.

※ 주7) 상세한 기간은 상품설명서를 참조 바랍니다.

- ④ 원활한 정부기여금 운영을 위해 이 적금에 입금한 금액의 입금거래 정정(취소·변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자 지급방법】

- ① 이 적금의 기본금리는 가입일 당시 우체국 창구 또는 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 ② 이 적금의 만기금리는 제1항의 기본금리에 제7조의 우대금리를 합하여 계약기간동안 적용합니다.
- ③ 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입일 당시 우체국 창구 또는 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④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입일 당시 우체국 창구 또는 우체국 홈페이지(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한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만기지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한 경우, 우체국은 1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 【우대금리】

- ① 아래 항목별로 제공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일 당시 우체국 창구 또는 우체국 홈페이지 (www.epostbank.go.kr) 등에 게시한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모든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구분	우대조건	우대금리
소득+ 우대	이 적금 신청 시점에 확인된 개인소득금액이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경우 ※ 단, 비과세소득(육아휴직급여(수당), 군장병급여) 가입자는 미적용	연 0.5%p
청년재무상담 이수	이 적금 계좌 만기일이 속하는 월의 3개월 전 말일까지 진흥원 ^{주8)} 에서 제공하는 청년재무상담*을 이수한 경우 * 진흥원 청년재무상담 웹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연 0.2%p
적금 첫 거래 고객 또는 급여이체 고객 (중복적용 불가)	이 적금 신규 가입일 전일로부터 최근 6개월 ^{주9)} 이내 우체국 적립식 예금의 가입, 유지, 해지가 없는 경우 이 적금 신규 가입 시 본인명의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으로 '급여성이체 기준'에 해당하는 실적 ^{주10)} 이 있는 경우	연 0.5%p
적금 자동이체	본인명의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월 1만원 이상 자동이체 약정을 하고 자동이체 납입 횟수가 계약기간 개월수의 50% 이상 ^{주11)} 인 경우	연 0.4%p
체크카드 이용	이 적금 신규 가입일이 속한 월의 1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체크카드 이용 실적 합산 ^{주12)} 2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4%p

※ 주8)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합니다)

※ 주9) '26.7.27. 신규 가입 시 가입일 전일 최근 6개월('26.1.27.~'26.7.26.)동안 우체국 적립식예금 가입, 유지, 해지가 없는 경우

※ 주10) 급여이체 기준은 '우체국 급여성이체 우대서비스' 기준을 따르며 해당제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름

① 기관으로부터 50만원 이상의 소속직원 급여이체가 지정급여일(±3영업일)에 있는 경우

② 개인이 급여이체 약정 후 50만원 이상의 급여성 입금실적이 있는 경우

③ 개인이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급여 등 입금내역 표시가 있는 경우

▶ 이 적금 가입 이전 급여이체 실적(급여이체 신규 약정 포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우대이율 적용

▶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당월 1일 ~ 말일까지 1개월간의 위 ①~③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익월 5일부터 익월 4일까지 급여성이체 실적 우대 적용

예시) 매월 1일부터 4일까지 가입자는 전전월 급여이체 실적 충족 시 적용, 매월 5일 이후 가입자는 전월 급여이체 실적 충족 시 적용

▶ 단, 위의 급여이체 실적(①~③) 상관없이 급여이체 신규 약정을 한 경우 약정일~익익월 말일까지 기간내에(최대 3개월) 이 적금 가입 시 우대이율 적용

※ 주11) 계약기간 36개월의 50%로 18회 ($36 \times 50\% = 18$) 이상 본인명의 우체국 수시입출식 예금에서 이 적금으로 적금 월 납부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 주12) 우체국 체크카드를 다수 보유한 경우 고객 기준으로 통합 산정, 체크카드 승인 취소 및 매입취소는 취소한 당월 실적에서 제외하며 체크카드 사용 금액만 실적으로 인정(신용결제 제외)

② 제1항 우대금리 외 이 적금 이벤트 기간 중 가입한 만기해지 계좌에 대하여 ‘이벤트 우대금리’를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

구분	우대조건	우대금리
이벤트 우대금리	2026.7.27.~2026.8.7. 기간 중 이 적금을 가입한 경우	연 1.0%p

제8조 【세율의 적용】

① 제5조에 따라 납입된 저축금액에 대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1.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이하 “과세특례 요건”이라 합니다)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2.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제9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는 제외합니다)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3.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

③ 제10조제8항에 따른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 ① 이 적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이하 “특별중도해지”라 합니다)하는 경우 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중도해지를 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가. 천재지변
 - 나. 가입자의 퇴직
 - 다. 사업장의 폐업
 - 라.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 마. 이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②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 ① 정부기여금은 진흥원이 제2조의 가입대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기여금을 말합니다.
1. 이 적금의 만기일 이후 해지한 가입자
 2. 이 적금의 계약기간 중 특별중도해지한 가입자 (단,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가 퇴직사유로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 사유는 일반형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적용합니다)
- ② 정부기여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진흥원이 지급합니다. 다만, 정부기여금은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기여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1. 일반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일반 소득자
 2. 일반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3. 우대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4. 우대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주13)}
5. 우대형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주13) 직전년도에 생애 최초 취업 후 신청 시점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정부기여금 지급기준 >

유형 ^{주14)}	대상	개인소득		가구소득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일반 (맞벌이 2인가구)	
일반형	일반 소득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6%
	소상공인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우대형	중소기업 재직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12%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200% 이하 (250% 이하)	
	소상공인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150% 이하 (200% 이하)	

※ 주14) 유형은 가입 시 확정되며, 가입 후 변동될 수 없음(단, 본조 제6항에 따른 변동은 가능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은 제5조에 따른 매월 및 연간 저축한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하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한국평가데이터의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신청 시점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지 않거나 재직 중인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이면 중소기업 재직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⑤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의 경우 계약기간 중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근무^{주15)} 해야 합니다. (단, 이직은 계약기간 중 2회까지 허용)

※ 주15) 중소기업 근로기준 확인은 만기 전월에 실시하며, 가입일부터 만기 한달 전 시점까지 중소기업 근속기간 합산이 29개월 이상이면서 이직 횟수가 2회 이하이어야 요건을 충족 함

- ⑥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일반형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적용합니다.

- ⑦ 정부기여금은 우체국이 진흥원을 대신하여 이 적금의 이자와 함께 지급하며, 정부기여금에도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⑧ 정부기여금 지급 시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진흥원이 우체국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적용합니다.
- ⑨ 만기일 이후에 해지할 경우에는 만기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제6조제4항에 따른 만기 후 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본조 제8항의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에 더하여 적용합니다.
-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중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⑪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재가입 등】

- ① 이 적금은 중도해지(제9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를 포함합니다) 후 재가입 가능하나, 해지일이 포함된 월을 기준으로 2개월 후부터 재신청 가능합니다.
 - ② 중도해지(제9조에 따른 특별중도해지를 포함합니다) 후 재가입 시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계약기간에서 기 가입기간만큼 차감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주16)}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 ※ 주16) “(계약기간 - 재가입 전 가입기간) / 계약기간”, 가입기간이라 함은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 기간을 개월 수로 환산한 기간(올림하여 환산)을 의미하며, 2회 이상 재가입할 경우 각각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서 버림)

제12조 【기타】

- ① 이 적금은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 ②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제2조제1항제1호의 나이요건과 제2조제1항2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기준은 진흥원을 통해 확인합니다.

- ④ 이 적금의 가입자가 이 특약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이 적금의 가입대상 청년의 수가 제10조에 따른 정부기여금 지급 가능 예산 수준을 초과할 경우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소득 금액이 적은 청년이 우선 가입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특약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